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2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이승아 [6572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4750호
시행일자 2026. 7. 21.
수 신 수신처 참조
참 조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6. 7. 13. ~ 7. 19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 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, 2026년 7월 13일 ~ 7월 19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1	2026. 7. 14.	고시 아님	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, 만성질환자 진단서 인정기준 변경 안내 ○2026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 진단서 인정기준 변경(진단서에 '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' 기재 시 인정)
2	2026. 7. 15.	제2026-150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○요양병원에 관한 급여기준 개정
3	2026. 7. 15.	고시 아님	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(동국제약(주)) ○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.7.28.(화)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